

직무설명서

구분	채용분야			근무조건		채용 인원
	직급	직무분야	채용권역	근무형태	근무지	
신입직	6급	산업안전(기계)	공고 참조	전일제 (주 40시간)	(최초 5년) 채용권역 내 (5년 경과) 전국 순환	공고 참조

공단사업	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보급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,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·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,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,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,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·운영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발간·제공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,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
핵심직무	▶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 분야 기술지원, 심사, 교육 등 사고·사망재해 예방사업
수행업무	▶ 전국 중상해, 사고사망 등 재해분석을 통한 고위험 사업장 선정 및 재해예방 기술지원 ▶ 유해위험방지계획서, 공정안전보고서 등 심사 계획서 접수, 심사·확인 결과 행정처리, 수수료 관리 ▶ 재정지원 사업장 신청서 접수, 투자계획 컨설팅 행정처리, 심사·결정 결과 행정처리, 투자완료확인, 사후 모니터링 ▶ 안전인증 심사 관련 행정처리, 민원 상담 및 답변, 제증명서 발급 ▶ 산업안전 분야 교육계획 수립 및 과정개발, 미디어 개발·보급, 교육과정 운영 제반 관리 등
필요지식 및 기술	▶ (주요) 고체·유체·열역학, 기계재료, 기계설계, 유공압, 비파괴 등 기계 관련분야 지식 ▶ (주요) 기계안전, 전기안전, 화공안전, 건설안전, 안전공학 등 산업안전 관련분야 지식 ▶ (일반)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타법령의 해석 및 적용능력 ▶ (일반)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도 ▶ (일반) 제조 현장에 대한 점검 시 잠재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제시·확인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력 ▶ (일반) 사업장의 공정 및 안전보건정보를 이해하고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 ▶ (일반) 통계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(한글, 엑셀, 파워포인트 등)
필요역량 및 태도	▶ 직무수행능력, 조직이해능력, 자기개발능력 ▶ 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대인관계능력, 정보능력, 기술능력 ▶ 객관적·종합적인 분석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▶ 조직 내·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▶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한 의식 등

(지원자격)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가능(단, 기타분야는 각 전형별 별도요건 포함)

지 원 자 격	학위	▶ 학위 무관	
	자격	▶ 자격 무관	
	경력	▶ 경력 무관	
	기타	고졸	▶ 접수마감일 기준,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(예정)인 자 ※ 접수마감일 기준, 대학중퇴자 포함 ※ 접수마감일 기준, '26.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※ 접수마감일 기준, 전문학사 이상 졸업(예정자) 제외 (졸업예정자가 아닌 재학·휴학 중인 자는 지원가능)
증빙서류		고졸	▶ (공통)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▶ (공통) 학자금 대출·장학금 신청증명서 / 필요 시, 대학사실 증빙서류 포함 ▶ (해당자) 대학교 제적(중퇴)증명서

(우대사항) 우대자격증 보유자는 아래 자격증 종류에 따라 [필기] 전형 만점의 가점 차등부여

우 대 사 항	자 격	구분	가산점 비율	자격증 종류
		기술사	5%	기계, 건설기계, 공조냉동기계, 산업기계설비, 조선, 금형, 금속가공, 금속재료, 금속제련, 용접, 표면처리, 산업계측제어, 기계안전, 소방
		기능장	3%	기계가공, 금형제작, 금속재료, 압연, 제강, 제선, 판금제관, 주조, 용접, 표면처리
		기사	3%	일반기계, 건설기계설비, 공조냉동기계, 설비보전, 조선선체, 조선의장, 사출금형, 프레스금형, 금속재료, 용접, 로봇기구개발, 로봇소프트웨어개발, 로봇하드웨어개발, 산업안전, 소방설비(기계분야), 승강기
		산업기사	1%	기계조립, 기계설계, 건설기계설비, 공조냉동기계, 조선, 사출금형, 프레스금형, 금속재료, 판금제관, 주조, 용접, 표면처리, 산업안전, 소방설비(기계분야), 승강기
	증빙서류	국가기술험득사항 확인서 또는 국가기술험득증		